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90

발의연월일: 2022. 9. 16.

발 의 자:김용판·하영제·서범수

이채익 • 서일준 • 박대수

조수진 • 박덕흠 • 김영식

박성민 • 이달곤 • 이주환

김학용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% 감면하고,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부로 적용 종료될 예정임.

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협·수협 등이 농어업인과의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.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는 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지원을 통해 농어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.

이에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2년 말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지방세특례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).

주요내용

- 가.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0조제1항).
- 나.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67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67조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) ① -----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 합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 ---- 2025년 12월 31일 ----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・영어자금・영림자금(營 林資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

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「조세 특례제한법」 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 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지방세법」 제 103조의 20에서 규정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 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.

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
<u>202</u>
5년 12월 31일